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인증업무의 범위	(필요시 별지 사용)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 인증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붙임 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소방장비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